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1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 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고체 상태로서 수분 함유량이 85퍼센트 이하거나 고형물(固形物) 함유량이 15퍼센트 이상 일 것
2.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이 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 가.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有機性) 오니류(汚泥類) 및 동물성 잔재물(殘滓物)
-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이나 연료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4.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 5.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
- 6. 유기성 폐기물(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유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될 것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
 - 1)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이하 "사료"라 한다)
 - 2)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이하 "비료"라 한다)
 - 3) 목재성형제품, 톱밥 등 나무제품
 - 4) 활성탄 또는 흑연 관련 제품
 - 나. 사료 또는 비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그 밖의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될 것
- 7.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수출은 제외한다)될 것.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 8.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용도,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9. 수입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입된 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계획서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

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형태·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및 품질 유지관리 체계 등에 관한 검사
3. 폐기물의 이물질, 유해물질, 수분 및 유기물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原緞)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 또는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다만,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4. 9.>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4. 9.>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 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9.>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9.>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군·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⑧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

제9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6조제6항에서 "명단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개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
 - 나.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제10조(순환이용사업자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3. 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②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유리용기류
3. 고철

제11조(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평가계획에는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도별 평가 대상 제품등의 유형 및 평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 제품등을 선정한 후 해당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⑦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해당 제품등의 기능 유지, 원료·재료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선 권고 사항 및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 권고안을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생산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생산자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2.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3. 개선기간
 4.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개선 사유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생산자등에게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생산자등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 대상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 미이행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산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3.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 4 개선 권고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1. 환경부(관할 지방환경관서를 포함한다)
2.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14조(품질표지의 표시 정보)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물질 함유량
2. 유해물질 함유량
3. 크기, 규격 등 순환자원의 성상(性狀)
4. 그 밖에 품질표지에 표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15조(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표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2.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표지 인증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 일정 등을 그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 품질표지에 표시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공정·품질 심사를 실시한 후,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표지 인증에 드는 인건비, 기술료, 경비 등의 비용을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받을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표지를 해당 순환자원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거나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1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③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1.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납부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내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에 대한 폐기물의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로서 별표 5 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
 2.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납부의무자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말한다)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
-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산정한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징수유예 기간 동안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징수유예·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새로운 납부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신용카드등을 통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① 환경부장관은 과오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감면금액을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부자에게 함께 통지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 통지를 받거나 감면금액을 반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감면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시·도지사: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70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지급한다.

제26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27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자원의 인정에 관한 정보
 3. 품질표지의 인증에 관한 정보
 4.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5.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 및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 체계

③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8조(협의체)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4.>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 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 징수
 - 라.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 마.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 바. 제2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4.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2. 4.>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관리, 목표의 재설정,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 자료의 접수 및 이행실적의 평가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외한다)에 관한 같은 호 각 목의 업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
5.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정보 공개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 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4.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제6장 벌칙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28552호,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30호,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의무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을 종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681호,2019. 4.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별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도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41호,2020.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40,000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	15,000원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품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제11조제1항 관련)

1. 납 또는 그 화합물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시안화합물
8. 유기인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석면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3. 폴리브롬화비페닐
14. 트라이메틸아민
15. 아세트알데히드
16. 벤젠
17. 스타이렌
18. 톨루엔
19. 자일렌
2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11조제6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현재 생산·가공·수입·판매되고 있는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 나. 대상 제품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 제품등과 같은 유형의 제품등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 등이 제공하는 자료를 우선하여 평가하되, 제품등의 재질, 제품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하여 시험·분석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라. 제품등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부분품 또는 구성품(이하 "부속품"이라 한다)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사항별 세부 평가방법

- 가.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처분의 가능성
 - 1) 순환이용 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비율
 -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순환이용할 수 있는 방법
 - 다) 순환이용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의 사유 및 개선 가능성
 - 2) 적정처분 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적정 처분방법
 - 나) 폐기물 처분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부분 및 폐기물로 처분되는 부분의 명칭, 구조, 구성 성분, 중량·부피, 재질·성질 등을 각각 분석한다.
- 다. 제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 1) 유해물질이 포함된 부속품의 구조와 위치 등을 확인한다.
 - 2)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 중 제품등에 포함되어 순환이용을 어렵게 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을 분석한다.
 -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같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의 범위 및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그 예외를 고려

하여 평가한다.

라. 제품등의 내구성

- 1)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가 제시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실제 제품등과 부속품의 사용기간 등을 비교하여 사용기간에 내용연수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다.
- 2) 제품등과 부속품의 재질·구조 등이 부속품의 교체·수리에 용이한지 여부 등을 분석한다.

3. 세부 평가에 따른 시험·분석방법

가. 측정 또는 시험·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가목에서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평가서 작성방법

가. 평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평가대상 제품등의 제품명, 제조사 및 제조일자 등 일반 현황
- 2)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가 사항별 세부 평가 결과
- 3) 세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종합평가 결과
- 4)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개선방법 등
- 5) 평가에 참고한 법령, 관련 규격·기준, 참고문헌,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

나.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평가서의 내용 중 법령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근거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 등을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4)

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시설·장비 기준

가. 시설기준

총 바닥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항온·제습시설 및 후드시설을 갖춘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해당 실험실 내에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나. 장비기준: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장비	수량
1) 이물질 분석	폐기물에서 이물질의 함유량을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2) 크기, 규격 등 성상 분석	순환자원의 규격과 크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3) 유해물질 분석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1대 이상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 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	1대 이상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시약 및 초자류(硝子類) 등	1식 이상

비고

- 폐지, 고철의 이물질을 현장에서 측정·분석하는 경우에는 1)의 장비를 갖추는 대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계량증명업자에게 의뢰하여 측정·분석을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유해물질의 시험·분석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의 장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술인력	해당 분야
가. 산업기사 1명 이상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 처리, 화공, 화학분석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제처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환경학, 토양환경, 화학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 상인 사람 1명 이상	공학, 공업화학, 화학, 생화학, 농화학, 농생물학, 보건학, 의학 등 관련 전공
--	--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인증기관에서 순환자원 품질인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되어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가목의 기술인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나목의 기술인력은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환경 관련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3. 2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17조 관련)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단위: 퍼센트)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나.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100 50
2.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가. 소각열에너지를 75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 소각열에너지를 6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60 50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경우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100 50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6.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를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	100

<p>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p> <p>나. 가목 이외의 경우로서 부과·징수 대상자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p>	
<p>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p>	<p>100</p>
<p>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p>	<p>100</p>

비고

- 위 표 제2호에서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비율(이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되, 세부 산정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2기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개별 소각 시설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소각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 나목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운영하는 2기 이상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로서 개별 소각시설별로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각 소각 시설별로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

3. 위 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3. 2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18조제1항 관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가. 불연성	kg당 10원	-
	나.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비고

- 위 표에서 폐기물 유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다목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불연성폐기물은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한다),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를 말한다.
 - 가연성폐기물은 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배출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본다.
 -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로 본다.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법제처

23

의 요율을 적용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여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50	70	100

